

대구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1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1181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 8 선고 2020가합157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고, 항소인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변론 종결2021. 8. 26.

판결 선고2021. 9. 16.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 8. 선고 2020가합1573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취지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구미시 D 공장용지 2,720.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A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1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C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67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과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67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홍은아

판사함병훈